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48 민사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530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변 론 종 결 2021. 4. 13.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7,283,925원 및 그중 317,283,803원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2020. 4. 16.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9. 접수 제330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¹⁾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등을 목적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A은 2018. 11. 30.까지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D, 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A은 2002. 10.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6. 23.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의 E은행에 대한 2016. 6. 27.자 대출채무를 보증금액 5억 4,000만 원의 한도에서 신용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만 한다). 피고 A은 당시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의 손해금)를 연대보증하였다.

1)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그 범위에서 피고 A에 대한 청구취지도 변경한 것으로 본다. 한편 소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표시 중 'G' 부분은 'H'의 오기(誤記)인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선택한다.

라. C는 2019. 9. 15.경부터 E은행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9. 12. 17.경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2020. 3. 31. E은행에 C의 대출원리금 합계 317,732,60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C로부터 448,800원을 회수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A은 2019. 4. 9. 피고 B 앞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33023호로 2019. 4.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만 한다).

바. C는 2020. 6. 1. 서울회생법원 2020하합10016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에 의하면, C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C를 대위하여 변제한 이후 회수하지 못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A의 주장 요지

피고 A이 2018. 11. 30. C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인도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어야 하는데, 원고가 그 연대보증인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 C가 파산한 것은 새로 취임한 경영진의 책임이다. 피고 A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에 발생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관하

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보증인이 회사의 직책을 맡아 있어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에 재직하게 된 관계로 보증할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그 직책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3055 판결,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사인 보증인의 지위에 변동이 있었고 채권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C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연대보증이 당연히 해지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C가 E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2016. 6. 27.자 대출채무를 원고가 개별보증(갑 제2호증)하는 것으로, 그 보증금액이 5억 4,0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채무도 확정채무에 해당하고, 피고 A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② 피고 A은 연대보증인이 변경되었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8조 제1항 제1호("C의 재산, 경영, 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아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원고 앞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1. 대표자 또는 과점주주인 이사의 변경, 최대주주 또는 지분 30%를 초과하는 주주의 변경”)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원고에게 경영상 중요변동사항인 대표이사의 변경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C의 의무를 정한 조항이지, 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인이 당연 변경됨으로써 종전 대표이사인 피고 A의 보증채무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A의 대표이사직 사임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변경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③ 피고 A은 C가 파산한 것이 새로 취임한 경영진의 책임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제할 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 A은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317,283,925원(= 대위변제한 317,732,603원 - C로부터 당일 회수한 448,800원 + 448,800원에 대한 당일분 이자 122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당일분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317,283,80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4. 16.까지는 기술보증기금법이²⁾ 정한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요지

2) 기술보증기금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정해진 손해금율(갑 제8호증)

1)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4. 8. 당시에는 C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자를 변제해 나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 내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개연성이 없었다.

2) 피고 A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에는 C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해의사도 없었다.

3) 피고 A은 C에 대한 대표이사 가수금 반환채권 189,007,640원 및 퇴직금 채권 80,919,985원, I 펀드 출자금 2,000,000,000원 등의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증여 당시는 물론 현재도 채무 초과 상태에 있지 않다.

4) 피고 B은 C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도 없었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 68368 판결 등 참조).

2) 을나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J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K의 신청으로, C는 2020. 6. 1.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 파산신청서에 기재된 C의 2015~2019년 재무상태 및 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다.

[C의 2015~2019년 재무상태]

계정과목	2015. 12. 31.	2016. 12. 31.	2017. 12. 31.	2018. 12. 31.	2019. 12. 31.
당좌자산	1,100,993,064	3,214,938,475	4,480,600,993	1,963,711,904	747,700,165
자산총계	3,012,703,890	6,454,463,405	7,400,227,488	5,777,901,445	3,912,070,629
부채총계	2,002,863,653	4,495,660,369	4,501,118,886	5,259,403,288	2,581,799,082
자본금	625,000,000	1,615,000,000	1,615,000,000	2,364,063,500	2,989,063,500
자본잉여금	375,000,000	35,005,920	178,578,271	3,429,513,861	5,608,581,330
이익잉여금	9,840,237	308,797,116	1,105,530,331	-5,275,079,204	-7,267,373,283
자본총계	1,009,840,237	1,958,803,036	2,899,108,602	518,498,157	1,330,271,547

[표 삽입을 위한 여백]

[C의 2015~2019년 손익]

계정과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3,101,029,141	5,920,352,494	4,755,829,744	1,475,347,720	575,147,651
영업이익	138,787,604	399,770,276	978,897,867	-5,478,813,838	-1,756,224,273
당기순이익	119,816,915	298,956,879	796,733,215	-6,380,609,535	-1,992,294,079

② C의 2019.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외상매출금이 545,987,05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파산신청서에는 매출채권 전부에 관하여 '시효경과로 회수 불가(2016. 1. 1. ~ 2017. 1. 24. 최종 거래), 폐업, 미확인, 회수 가능성 없음' 등의 사유로 청산가치가 '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L Inc.에 대한 3,359,727,030원의 매출채권

에 관하여도 'C의 미국 현지 법인으로 부채 초과로 회수 가능성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파산신청 당시 C의 재산 중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본점 사옥 건물 및 그 토지가 전부이나, 그 부동산들에 관하여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약 1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③ C에 투자한 I 펀드는 '피고 A이 2015년부터 가공매출의 재무제표 계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식회계를 자행해 왔다. 해당 가공매출의 규모는 2018년에만 45억 원 규모에 이른다'면서 피고 A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현재 피고 A에 대하여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합381호).

3) 위 인정 사실과 기초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4. 8.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 A이 2016. 6. 23.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4. 8. 당시 이미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② C의 파산 경위와 재무상태의 급격한 변동, 파산 당시 매출채권의 청산가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 A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는 C의 매출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는 피고 B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C는 2018년 이미 매출이 급락하여 기존 자본총계를 크게 초과하는 6,380,609,535원의 막대한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실질적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2018. 11. 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피고 A은 위와 같은 C의 손실 발생과 재무상태의 악화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C는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9. 9. 15.경부터 E은행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9. 12. 17.경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A의 채무 초과 상태

1) 적극재산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4. 8.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건물과³⁾ 시가 2억 원의 양주시 아파트가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피고 B은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 C에 대한 대표이사 가수금 반환채권 189,007,640원 및 퇴직금 채권 80,919,985원, I 펀드 출자금 2,000,000,000원이 더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건물과 양주시 아파트가 전부라고 보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C에 대한 대표이사 가수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을나 제3호증,

3) 기업은행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4) 양주시 M아파트, N호. 위 양주시 아파트에 관하여는 기업은행에 대한 2008. 6. 27.자 대출채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O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이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C는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설령 피고 A이 위 채권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는 없어 보인다.

(2) I펀드 출자금에 관하여, 을나 제9호증의 기재 및 펀드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인 J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A은 펀드에 20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한 것이 아니라 C의 주식을 출자하였고, ② 이후 펀드가 C에 투자하였으나 피고 A은 'C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유로 펀드의 조합원에서 제명되었으며, ③ 현재 피고 A에 대하여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A의 출자 내역과 펀드와의 관계, C에 대한 파산선고 등을 종합하면, 피고 A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액수에 상응하는 자산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 출자금을 피고 A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 보기도 어렵다.

2) 소극재산

재산의 표시	가액(원)	증거의 요지
원고에 대한 채무	317,283,925	
O에 대한 근저당채무 ^(위 각주4)	50,000,000	갑9
기업은행 2008. 6. 27.자 대출 ^(위 각주4)	3,906,000	갑11
기업은행 2017. 7. 10.자 대출 ^(위 각주3)	30,000,000	갑11
P 2017. 10. 18.자 대출	2,000,000	갑11
Q 2018. 10. 31.자 대출	48,994,000	갑11
R은행 2019. 4. 2.자 대출	19,457,000	갑1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8. 4. 20.자 보증	1,290,000,000	갑11
소극재산 합계 ⁵⁾	1,761,640,925	

3) 소결론

위와 같은 판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4. 8.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피고 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 B이 주장하는 C에 대한 대표이사 가수금 반환채권 189,007,640원 및 퇴직금 채권 80,919,985원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는 달라지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1) 결국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A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 것은 피고 A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A의 배우자이자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 B은 자신은 C의 경영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 B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5) 피고 A은 E은행에 대한 2016. 7. 4.자 보증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2020. 10. 23.자 원고 준비서면 2쪽).

재판장 판사 이기선

판사 박수진

판사 현재연

별지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T건물(H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04.16㎡(56.58㎡ 다세대주택 1세대, 47.58㎡ 근린생활시설)

2층 134.38㎡(다세대주택 1세대)

3층 134.38㎡(다세대주택 1세대)

4층 115.52㎡(다세대주택 1세대)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U호 철근콘크리트조 44.84㎡

3.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 서울 은평구 S 대 239㎡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39분의 25.65. 끝.